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1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22,777,619	15,683,329
일반회계	377,229,945	11,316,898
특별회계	145,547,674	4,366,430
기타특별회계	145,547,674	4,366,43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207,369	36,221
주차장특별회계	130,529	3,91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310,451	69,314
주택사업특별회계	102,628	3,07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10,715,411	3,321,46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34,545	4,036
치수사업특별회계	1,006,030	30,18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05,860	15,176
기반시설특별회계	88,545	2,656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29,346,306	880,38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20,558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